

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담회(8.26.) 기타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

○ 둔산지구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개발 방안

- 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, 구역의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구역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계획하는 것임

○ 2개 단지가 통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인데 한 단지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

- 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(통합정비 구역)을 분할하여 단독 추진하는 것은 통합정비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불가함

○ 토지등소유자가 아닌자가 주민대표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

-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(주민대표단의 구성. 승인 등) 토지등소유자는 수립·고시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함으로 주민대표단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하는 것이 법정 구조이며,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가 구성원이 되는 것은 법령상 근거없음